##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서

문서번호: 총무과-1314호 발 신 일: 2019. 04. 30.

수 신 인: 이떡이야

제 목: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

부 정 당 업 자	상호 또는 법인명칭	이떡이야	사업자등록번호		314-09-27084	
		ा <del>च</del> ा न	주민등록번호		53*92*-×××××	
	주 소	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15(산성동)				
	대 표 자	채영순	주민등록번호		53*92*-xxxxx	
	영 업 종 목 (세 부 품 목)	소매(떡)	면허 · 등록		·번호등	
제 재 내 용	제 재 근 거	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				
	제 재 연 월 일	2019.04.30	만듦	E 연 월 일	2019.07.29	
	제 재 게 시	홈페이지에 게재				
	제 재 기 간	3개월	3개월			

## (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)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관한 법률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) 제1항 제10호, 동법 시행규칙 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) [별표2-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2-라]』관계 직원(장례식장 물품구매 담당)에게 1천만원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

※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